

환급금 산출방식(제10조 관련)

1. 각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 총액
마권 총발매금액×[1-(마권발매 수득률+마권발매 과세율)]
2. 단승식·복승식·쌍승식·삼복승식 및 삼쌍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승마에 대한 환급금 총액: 제1호의 환급금 총액
3. 연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각 승마별 환급금 총액
 - 가. 제1착마 및 제2착마를 승마로 할 경우: 제1호의 환급금 총액의 2분의 1
 - 나. 제1착마, 제2착마 및 제3착마를 승마로 할 경우: 제1호의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
4. 복연승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각 승마별 환급금 총액: 제1호의 환급금 총액의 3분의 1
5.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승마에 대한 환급금 총액: 마사회가 제1호의 환급금 총액에 승마 결정방법 및 순위별 환급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되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금액